

의안번호	제 45 호
의결연월일	2004. 10.

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10. 15

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

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45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2004. 10. 15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농업개발시설의 운영목적중 현장 학습체험장을 추가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⇒ 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

나. 운영목적중 현장 학습체험장 추가

다. 인용 조례명 및 용어 정비

- 지역농업개발센터 ⇒ 농업개발시설
- 용어의 정의 ⇒ 정의
- 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 ⇒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. 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4. 9. 17 ~ 2004. 10. 7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중 “지역농업개발센터” 를 “농업개발시설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천시농업기술센터(이하 “농업기술센터”라 한다)에 농업·농촌·농업인과 관련된 조사·분석·시험연구, 농업인 교육·영농상담·현장 학습체험장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“농업개발시설” 이라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·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하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 역할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지역농업개발센터” 를 “농업개발시설”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, 같은조같은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현장 학습체험장

제4조제1항중 “지역농업개발센터” 를 “농업개발시설”으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중 “명에 의하여” 를 “지시를 받아”로 하며, 같은조제3항 단서중 “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” 를 “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6조중 “지역농업개발센터” 를 각각 “농업개발시설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의 제목중 “지역농업개발센터” 를 각각 “농업개발시설”로 하고, 별표 2 시설명란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의 운영방법란중 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” 를 “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운영) ① <u>지역농업개발센터</u>를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<u>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</u>에 의한다.</p>	<p>제4조(---) ① 농업개발시설은 ----- 지시를 받아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</u>에 의한다.</p>
<p>제5조(교육훈련) ① <u>지역농업개발센터</u>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·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5조(---) ① 농업개발시설은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소요경비) <u>지역농업개발센터</u>의 설치·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비에서 충당한다.</p>	<p>제6조(-----) <u>농업개발시설</u>----- ----- -----</p>
<p>[별표1] 제목 <u>지역농업개발센터</u>표준시설및장비확보기준표</p>	<p>[별표1] 제목 <u>농업개발시설</u>표준시설및장비확보기준표</p>
<p>[별표2] 제목 <u>지역농업개발센터</u>시설운영방법</p>	<p>[별표2] 제목 <u>농업개발시설</u>운영방법</p>
<p>[별표 2] 시설명란의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의 운영방법 <u>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</u></p>	<p>[별표 2] 시설명란의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의 운영방법 <u>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</u>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지 방 자 치 법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

3. 농림.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

차. 지역산업의 육성. 지원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